

# 수원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서

(앞면)

신청인 (위임한 사람)	성 명		성 별		연 락 처	
	생 년 월 일	년	월	일		
	주 소					
	<b>참고</b> 장애인용 G-PASS 체크카드 · 현금카드 · 단순카드 지원 ※ G-PASS 신용카드 불가					
	카드 번호		계좌 번호			
구분	1. 신규( ) 2. 변경( ) 3. 해지( )					
	1. 본인( ) 2. 대리인( ) ※ 대리인 위임장 작성(서식 하단)					

본인(대리인 포함)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, 위와 같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위임한 사람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## 수원시장 귀하

###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등 동의서

	항 목	수 집 이 용 목 적	보 유 기 간
□개인정보 수집·이용내역	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G-PASS카드 번호 본인 명의 은행정보	수원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신청 자격 확인	5년
	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G-PASS카드 번호 본인 명의 은행정보	G-PASS 카드 사용자 등록	사업종료 또는 지원대상 제외 시
	G-PASS카드 사용내역	버스요금 지원액 확인	5년
□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	제공받는자	제공목적	제공 항목
	정산사 (이동의즐거움)	버스요금 청구	G-PASS카드 사용내역
□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	취급을 위탁 받는자(수탁업체)		업무내용
	정산사(이동의즐거움)		G-PASS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관리
□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	이용목적	이용항목	보유기간
	수원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대상자 거주지 확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	5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, 제3자 제공, 취급업무 위탁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, 제3자 제공, 취급업무 위탁에 동의하십니까? 예 아니오

신청인(위임한 사람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### 위임장

수원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.

신청인(위임한 사람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위임받은 사람)	성 명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	연락처		관 계	
	주소			

**유의사항**

1.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2. 장애인 G-PASS카드는 발급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.타인에게 대여·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·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됩니다.
3. 서비스 신청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4. 타 기관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 될 시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.

**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**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연락처			
	주 소			
	신 청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계좌의 지급 제한 사유(압류계좌, 지급정지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(신용불량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긴급·안전·보호 등 불가피한 기타 사유( ) ※ 사유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첨부		
	수령기간	년	월부터	년 월까지 ( 개월간)
대리수령인	성 명		생년월일	
	연락처		신청자와의 관계	
	주 소			
대리수령 계좌정보	은행명		예금주 (대리수령자)	
	계좌번호			

본인은 위와 같이 수원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성명 \_\_\_\_\_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수원시장 귀하

**유의사항**

1.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2. 장애인 G-PASS카드는 발급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.타인에게 대여·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·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됩니다.
3. 서비스 신청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4. 타 기관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 될 시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.